

定 款

1989. 7. 7 制定

1991. 3. 28 改正

1993. 9. 11 改正

註 : 본 정관은 지난 7월 7일 임시총회를 거쳐 변경 승인되어
개정된 정관으로 이에 수록한다.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(名稱) 本 協會는 社團法人 韓國建設
安全技術協會(以下 “本 協會”라 함)라 稱
한다.

第 2 條(目的) 本 協會는 建設安全技術의 研
究開發과 普及, 安全診斷 및 點檢, 技術指導
및 教育 等을 通하여 貴重한 人名과 經濟
의 損失 等의 災害를豫防하고 建設安全
技術者의 資質向上 및 權益擁護를 通한 安
全技術의 先進化를 早期에 達成토록 함으
로써 國家建設產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
로 한다.

第 3 條(本部 및 支部) 本 協會는 서울 特別
市에 本部를 두고 必要에 따라 地方에 支
部를 둘 수 있다.

第 4 條(事業) 本 協會는 設立目的을 達成하
기 為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.

1. 建設業의 產業災害豫防을 為한 安全診斷
및 評價, 教育訓練 等 勞動部 長官이 承認,
認可 또는 委託하는 諸般事業

2. 建設安全技術者의 資質向上, 權益擁護,
福利增進 等을 為한 弘報, 會員管理, 技術
指導 및 各種 支援事業
3. 建設現場 產業災害 調查支援 및 原因
分析 · 評價와 標準安全管理費 計上 및 使用
技法 指導, 有害危險防止計劃書 作成指導
等에 關한 業務
4.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, 公共機關 및 團體,
建設에 關聯되는 各社 또는 個人이 依賴하
는 建設安全에 關한 技術支援, 安全診斷
等의 技術用役事業
5. 工事目的物 等 建設工事와 關聯된 構築
物, 工作物, 工事用設備 및 機械 · 器具의
安全性과 勤勞者의 危險豫防을 為한 安全
點檢 및 診斷
6. 構築物 等의 解體, 增改築, 老朽化, 火災,
振動, 水位變動, 荷重變化 및 天災地變 等
으로 因한 危險으로부터 安全性을 確保하기
為한 診斷 및 評價와 崩壞 等 事故豫防對
策의 提示
7. 國內外 關聯 研究機關과의 研究協調 및

情報交流, 專門技術圖書 編纂 및 學術發表會 等의 開催

8. 其他 國家社會 및 公益에 이바지할 수 있는 建設安全에 關한 綜合的인 研究開發 및 各種 調查 研究事業

第5條(公告方法) ① 本 協會의 公告는 本 協會의 揭示板(支部揭示板 包含)에 이를 揭示함과 同時에 本部의 所在地에서 發刊하는 1個 以上의 日刊新聞과 本 協會에서 發刊하는 技術情報誌에 掲載한다.
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內容이 必要하고 認定될 때에는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한다.

第6條(通知 및 催告方法) 本 協會의 會員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會員名簿에 記載된 會員의 住所로 한다. 但, 會員이 따로 本 協會에 連絡處를 通知하였을 境遇에는 이에 依한다.

第2章 會員

第7條(會員의 構成) 本 協會의 會員은 正 會員, 名譽會員 및 準會員으로 構成한다.

第8條(會員의 資格) 本 協會의 目的과 趣 旨에 贊同하는 者로서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.

① 正 會員은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建設 安全管理技術 資格을 取得한 者로 한다.

② 名譽會員은 國家에 功勞가 至大하고 學 識과 德望이 높은 人士로서 理事會의 推薦을 받은 者로 한다.

③ 準會員은 教育法에 依한 學校에서 建設 安全技術에 關聯된 學科를 專攻하고 卒業한 者, 本 協會에서 實施하는 建設安全管理者 養成教育을 修了한 者 및 安全管理分野에서 從事한 經驗이 있는 者로 한다.

第9條(會員의 義務) 會員은 本 協會가 定

하는 會費를 負擔하고 本 協會의 定款 및 諸規定을 遵守하여야 한다.

第10條(會員의 權利) ① 正 會員은 平等한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.

② 會員은 本 協會 定款 第4條에 定한 事業에 參與權을 가진다.

③ 會員은 本 協會의 研究 및 技術開發 等의 資料 活用權을 가진다.

第11條(會員의 加入) 本 協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加入申請書를 다음 書類와 함께 本 協會에 提出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고, 所定의 入會費를 納付함으로써 會員이 된다.

1. 技術資格證 寫本(原本對照)

2. 住民登錄證 寫本

3. 現 勤務處 在職證明書 또는 諸證明書

4. 其他 必要로 하는 書類

第12條(會員의 申告義務) 會員이 提出한 加入申請書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遲滯 없이 이를 本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.

第13條(脫退) ① 會員이 本 協會를 脫退하고자 할 境遇에는 脱退願을 提出하여야 한다.

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된 때에는 自動 脱退된 것으로 본다.

1. 會員의 國家技術資格 喪失

2. 第14條 規定에 依한 除名

3. 會員의 死亡

4. 3年 以下의 長期間에 걸쳐서 本 協會에 會費를 納付하지 않은 會員

③ 會員이 海外移民을 하였을 때에는 會員의 資格을 留保한다.

第14條(除名의 事由)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除名할 수 있다. 但, 本 協會는 理事會 開催 10日前에 그 會員에 對하여 除名의 事由를

通知하고 理事會에서 解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.

1. 法令에 依據한 監督官廳의 處分 또는 本 協會 定款과 諸規定에 違反하거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本 協會의 名譽를 失墜하게 한 會員
2. 本 協會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會員
3. 本 協會의 目的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會員
4. 本 協會의 事業을 妨害한 會員
5. 本 協會에 財產上의 損害를 끼치는 行爲를 한 會員

第 15 條(脫退會員의 再加入) 第14條 規定에 依하여 除名된 會員은 除名日로부터 3年이 經過한 後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會員으로 再加入할 수 있다.

第 16 條(脫退會員의 請求書)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脫退 또는 除名된 會員은 既 納付한 加入費, 會費 等에 對하여 返還 請求權을 行使하지 못한다.

第 3 章 總 會

第 17 條(總會) ① 本 協會의 總會는 正會員으로 構成하되, 代議員會로 가름할 수 있다.
② 總會는 會長이 召集하며, 會長이 그 議長이 된다.
③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이를 區分한다.

第 18 條(定期總會) 定期總會는 每年 2月中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第 19 條(臨時總會) ① 臨時總會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1.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
2. 代議員 30人 以上이 書面으로 會長에게

召集을 要求한 때

3. 正會員 300人 以上이 書面으로 會長에게 召集을 要求한 때
4. 第44條 第4項에 依하여 監事が 要求한 때

② 前項 第2號, 第3號, 第4號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은 2週日 以内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.

第 20 條(監查의 總會 및 理事會 召集) ① 監事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5日 以内에 臨時總會 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.

1. 前條 第2項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會長이 正當한 理由 없이 2週日 以内에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
 2. 第31條 第2號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會長이 正當한 理由 없이 1週日 以内에 理事會를 召集하지 아니한 때
- ② 前項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에는 監查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할 수 있다.

第 21 條(總會 召集通知) 總會 召集通知는 總會日로부터 7日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한 通知書를 發送하거나, 國內 日刊紙에 公告하여야 한다.

第 22 條(總會의 議決事項) 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.

1. 定款의 變更
2. 任員의 選出과 解任
3.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策定과 그 變更
4. 決算承認
5. 事業 所要資金의 起債
6. 事業計劃 및 經費豫算으로 定한 것 外에 새로이 義務를 지며 權利를 衰失하는 行爲
7. 不動產의 取得, 變更, 讓渡, 其他의 處分 또는 이에 關한 權利의 設定

8. 其他 重要한 事項

第 23 條(議決 定足數) ① 總會의 議決은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數 以上 으로 議決한다.

② 第22條의 變更에 關한 事項은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. 但,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은 在籍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.

第 24 條(議決權의 制限) 本 協會와 會員間 에 利害가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 議決하는 境遇에는 그 會員은 議決에 參加할 수 없다.

第 25 條(總會의 議事錄) ① 總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.

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事項과 結果를 記載하고 出席任員 2人 以上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.

第 26 條(代議員의 定數 및 選出과 任期) ① 本 協會 代議員의 定數는 別表 1로 하며, 代議員의 選出에 關한 事項은 正會員 中에서 會長團 및 正會員의 推薦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構成하되 그 選出方法은 別途規定으로 定한다.

② 代議員 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前項의 方法으로 缺員數를 補選한다.

③ 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補選으로 選出된 代議員의 任期는 前任者的 殘餘期間으로 한다. 但, 初代代議員의 任期는 4年 으로 한다.

④ 代議員의 缺損數가 總 代議員數의 4分의 1 以上에 達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缺員된 代議員의 補選은 다음 定期總會까지 이를 行할 수 있다.

⑤ 本 協會의 任員은 前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然職代議員이 된다.

第 27 條(代理人의 資格) ① 代議員의 代理人은 本 協會의 正會員이어야 한다.

第 4 章 理 事 會

第 28 條(理事會) ① 本 協會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기 為하여 本 協會에 理事會를 둔다.

② 理事會는 會長團을 包含한 理事 全員으로 構成한다.

③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.

第 29 條(理事會의 參與制限) ① 本 協會의 任員 中 本人 또는 本人과 直接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을 議決할 때에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.

第 30 條(議決事項) ① 다음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.

1. 本 協會의 基本方針에 關한 事項
2. 本 協會의 運營에 關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執行에 關한 事項
3. 豐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
4. 定款 變更에 關한 事項
5. 組織, 機構 및 定員에 關한 事項
6. 重要한 規定의 制定 또는 改正에 關한 事項
7. 事業 所要資金의 起債 및 償還에 關한 事項
8. 重要한 財產의 取得, 處分 및 賃貸借에 關한 事項
9. 重要한 代行事業의 受託, 委託 및 再委託施行에 關한 事項
10. 利益 剩餘金의 處分에 關한 事項
11. 重要한 訴訟 및 和解에 關한 事項
12. 代議員 選出, 會員加入, 加入費, 會費 및 經費賦課에 關한 事項
13.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

14. 其他 業務運營에 必要하다고 會長이 認定하는 諸般事項

第31條(理事會 議長과 召集) 會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다음과 같은 境遇 理事會를 召集한다.

1.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
2.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은 때
3. 第44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監事의 要求가 있은 때

第32條(議決方法)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한다.

②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賛成으로 한다.

③ 可否同數일 때에는 會長이 決定한다.

第33條(書面決議) 會長은 理事會議決事項 中에서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는 文書로써 理事會의 同義를 얻어 執行할 수 있다.

第34條(議事錄 作成)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が 署名 擦印하여야 한다.

第5章 支 部

第35條(支部 設置) 地域別로 正會員數가 50人 以上일 때 勞動部 長官의 事前承認을 得한 後, 本 協會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따라 支部를 設置하여 運營할 수 있다.

1. 서울特別市 및 首都圈 地域은 別途의 支部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本部에서 管轄한다.
2. 地方은 各 直轄市廳 및 道廳所在地에 支部를 둘 수 있다.

第36條(支部 名稱) 各 支部의 名稱은 社團法人 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(直轄市道) 支部라 한다.

第37條(支部의 機能 및 活動) 支部의 機能 및 活動은 다음 各號의 事項으로 한다.

1. 第4條의 事業 및 活動에 關聯이 있는 事項 中 理事會에서 委任 또는 承認받은 事項
2. 總會에서 特히 指定한 事項

第38條(支部組織 및 規程) 支部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規程의 制定 및 變更은 本 協會 規程에 따라 當該 支部에서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 運營한다.

第6章 委 員 會

第39條(委員會의 設置) ① 第30條 規定에 依한 理事會의 議決事項에 關한 諮問과 第4條 規定에 依한 事業을 為하여 必要한 境遇 各各의 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② 本 協會에 第4條 規定에 依한 事業을 為하여 該當 專門分野別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.

第40條(委員會의 組織과 運營) ①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은 別途의 規程으로 定한다.

② 諮問委員은 本 協會 發展과 專門分野의 技術에 對한 諮問에 應하고 建設災害 豫防活動에 努力하여야 한다.

第7章 任 員

第41條(任員의 定數) ① 本 協會에 다음 各號와 같이 任員을 둔다.

1. 會長 1人(常勤)
2. 副會長 3人(常勤 1人, 非常勤 2人)
3. 理事 15人(常勤 若干名)
4. 監事 2人(非常勤)

② 常勤理事는 會長이 指名한다.

第41條의 2(名譽會員 및 顧問) ① 本 協會에 名譽會長 1人과 顧問 若干名을 둔다.

② 直前任期 會長은 當然히 理事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되고 顧問은 本 協會에 功勞가 至大하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 中會長團의 推薦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推戴한다.

③ 名譽會長은 會長 및 理事會의 要請에 依한 業務를 遂行하며 顧問은 本 協會發展을 為한 會長의 諮問에 應하고 本 協會의 元老로서 活動한다.

第 42 條(任員의 職務) ① 會長은 本 協會를 代表하며 本 協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한다.

② 會長은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, 總會 또는 理事會가 附議 및 建議한 事項을 處理하여야 한다.

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時나 闕位된 때에 常勤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, 會長 및 常勤副會長이 有故時나 闕位된 때에는 미리 會長이 指定하는 常勤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.

④ 常勤理事는 會長과 副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指定하는 바에 따라 本 協會의 業務를 管掌한다.

第 43 條(代理人의 選任) ① 會長은 本 協會의 業務에 關한 一切의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行爲를 할 때에는 常勤副會長, 常勤理事 또는 事務局 職員 中에서 그의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.

第 44 條(監事의 職務) ① 監事는 本 協會의 經理와 財產 및 業務執行 狀況을 每 會計 年度別로 1回 以上 監查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.

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書에서 必要하고 認定되는 事項은 建議書를 添附할 수 있다.

③ 監事는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別途의 人員이 必要할 時 會長에게 要求하고 會長은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.

④ 監事が 財產의 狀況 또는 業務의 執行에 關하여 不正事實을 發見한 境遇에 이를 總會 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勞動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第 45 條(任員의 選出 및 任期) ① 會長, 副會長 및 監事는 正會員 中 總會에서 選出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,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.

但,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.

② 直前任期 副會長은 當然히 理事로 推戴된다.

③ 理事는 會長團의 推薦에 依하여 總會의 承認을 받고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,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.

但, 重任할 수 있다.

④ 任員 中 缺員이 發生한 때에는 第1項, 第3項을 準用하여 補選하며,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.

第 46 條(任員의 資格制限)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本 協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.

1.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

2. 禁治產者, 限定治產者 및 破產者

3. 法令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

4. 禁錮 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,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고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

5. 法令에 依하여 懲戒免職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

6. 他 機關에서 懲戒, 免職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

7. 本 協會의 正會員이 아닌 者

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退職된 任員이 退職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效力を 衰失하지 아니한다.

第8章 加入費, 會費, 贊助金 및 寄附金

第47條(加入費) 第11條의 规定에 依하여 本 協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會員은 別途規程에서 定하는 一定額의 加入費를 納付하여야 한다.

第48條(會費, 贊助 및 寄附金) ① 本 協會의 會員은 别途規定에서 定하는 年會費 또는 終身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.
② 會費 納付方法, 時期 等에 對하여는 别途規程으로 定한다.
③ 本 協會와 關聯된 團體 및 個人으로부터 寄附 또는 贊助된 金額의 使用에 對하여는 别途規程으로 定한다.

第9章 會 計

第49條(會計年度) 本 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 會計年度에 準한다.

第50條(特別會計의 設置) ① 本 協會에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.
② 特別會計를 두고자 할 때에는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第10章 補 則

第51條(書類備置 義務) ① 本 協會 事務局에 다음 各號의 書類 및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.

1. 定款
 2. 任員 및 職員의 名簿와 履歷書
 3. 總會 會議綠 및 理事會 會議綠
 4. 財產臺帳 및 負債臺帳
 5. 補助金 管理臺帳
 6. 収入, 支出에 關한 帳簿 및 證憑書類
 7. 主務官廳 및 關係機關과의 往復書類
- ② 決算報告書는 定期總會 1週日 前까지

事務局에 備置하여야 한다.

③ 會員과 本 協會의 債權者는 本條 第2項의 書類를 閱覽할 수 있다.

第52條(專擔部署의 設置) ① 本 協會의 會務를 遂行하기 為하여 事務局 및 其他 必要한 部·室을 둘 수 있으며 局, 部, 室에 각各 局長, 部長, 室長을 둘 수 있다.
② 事務局長은 正會員 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.
③ 專擔部署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别途規定으로 定한다.

第53條(任員과 職員의 兼職制限) ① 本 協會의 任員은 事務局의 幹部職員을 兼할 수 없다.
② 常勤任員과 職員은 營利的 事業에 從事할 수 없다.
但, 理事會가 承認을 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.

第54條(常勤任員 및 職員의 任命) ① 常勤任員 및 幹部職員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하고, 其他職員은 别途規程에 依하여 會長이 任命한다.
② 前項의 幹部職員이라 함은 局長, 室長, 部長을 말한다.

第55條(給與) 本 協會 常勤 任職員의 紙與에 關한 事項은 别途規定으로 定한다.

第56條(退職金) ① 本 協會 常勤 任職員의 退職手當에 關한 事項은 别途規定으로 定한다.
② 本 協會는 别途規定에 定하는 바에 따라 退職給與 積立金을 積立할 수 있다.

第57條(實費補償과 報酬) 本 協會 代議員 및 委員의 實費補償 및 報酬는 别途規程으로 定한다.

第58條(事業計劃과 收支豫算) 會長은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收支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前

에 理事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, 次期總會에서 追認을 얻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第 59 條(非會員의 資料利用) 本 協會는 會員의 利用에 支障이 없는 範委內에서 第4 條에서 規定한 事業의 結果로 얻어진 諸般 資料를 非會員에게도 利用하게 할 수 있다.

第 60 條(規程)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은 定款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總會의 議決을 얻어 規程으로 이를 定한다.

1. 總會에 關한 事項

2. 事業의 執行과 會計에 關한 事項

3. 任員에 關한 事項

4. 會員에 關한 事項

② 本 協會 定款 및 規程에 規定되지 않은 諸事項은 法令 및 一般慣例에 따른다.

第 11 章 解散 및 清算

第 61 條(殘餘金의 處理) 每 會計年度의 剩餘金은 缺損을 補填하고 別途規定에 依한 事業準備金을 控除하며 殘餘金 發生時에는 理事會 議決을 거쳐 處理한다.

第 62 條(缺損 補填) 本 協會는 會計年度末에 缺損이 있을 境遇에는 別途로 定하는 事業規程에 따라 이를 補填한다.

第 63 條(解散) ① 本 協會의 存續이 必要치 않을 時에는 總會決議에 依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解散한다.

② 議決定足數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在籍代議員 3分의 2 以上的 贊成으로 議決한다.

第 64 條(殘餘財產의 歸屬) 清算人은 本 協會의 解散時 殘餘財產을 處分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遲滯 없이 政府 또는 公共團體에 寄贈하거나, 全會員에게 均等配分하여야 한다.

附 則

第 1 條(施行日) 本 協會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登記한 날(93. 10. .)로부터 效力を 發生한다.

別表 1. 代議員의 定數

等級 區分	技術士	技士 1級	技士 2級	合計
代 議 員	30名	15名	5名	50名

但, 下位等級의 該當者가 없을 때에는 上位等級에서 代身할 수 있다.